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6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폐지이유

○ 성주군 성산청소년수련원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수보다는 폐쇄가 경제적이고,『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』 및 『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』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현행 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나. 관련공문 : 주민생활지원과-14044(2011.04.11) 성주군 성산수련원 관리전환계획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라. 합　　의 : 총무과, 재무과 합의되었음
마. 기　　타 :
(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(2) 입법예고(2011. 4. 28 ~ 2011. 5. 27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